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053

발의연월일: 2025. 2. 11.

발 의 자: 박홍배 · 이용우 · 김남근

이광희 • 윤준병 • 민병덕

고민정 · 김태선 · 백승아

송재봉 • 박정현 • 복기왕

김주영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형적으로 공장(工場)근로자의 노동보호를 기준으로 하여 제정됐으며 이러한 성격이 지금도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바,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과는 괴리가 있다는 문제가 있음.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사용자가 종속적 노동을 수취하면서도 마치 이들이 독립계약자인 것처럼 꾸미는 등 자영업자로 위장시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하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이렇게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고용관계 권고(권고 제198호 제11항),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주 노동법에 도입한 'ABC테스트'등과 같이 국제사회에서도 근로자성 증명책임 전환에 관 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피해 를 입고 있는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해 근로자성에 관한 입증책임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최근의 새로운 고용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부합하도록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하고자 하며,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근거사실의 제출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환하도록 변경하여 차별과 배제의 노동 현실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1호).

법률 제 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하되, 사용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노무제공자가 업무수행에 관하여 계약상으로나 실제로 사용자의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 나. 노무제공자가 사용자의 통상적인 사업 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다. 노무제공자가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과 동종 분야에서 본인 의 이름과 계산으로 독립하여 설립된 직종, 직업 또는 사업에 참여하거나 종사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①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1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	
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	
하는 사람을 말한다. <u><후단</u>	<u>이 경</u>
<u>신설></u>	우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하되,
	사용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
	을 모두 입증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u><신 설></u>	가. 노무제공자가 업무수행에
	관하여 계약상으로나 실제
	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u>받지 아니하는 경우</u>
<u><신 설></u>	나. 노무제공자가 사용자의
	통상적인 사업 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u><신 설></u>	다. 노무제공자가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과 동종 분
	야에서 본인의 이름과 계
	<u>산으로 독립하여 설립된</u>
	직종, 직업 또는 사업에

	참여하거나 종사하는 경우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